

정책연구보고 P53/ 2002. 12.

# WTO/DDA 농업협상 시장접근분야 세부협상원칙(Modality) 수립에 관한 논의 동향과 과제

이 재 옥 선임연구위원  
서 진 교 부연구위원  
이 병 훈 연구원

## 머 리 말

지난 2000년부터 UR 농업협정문 제20조에 근거하여 시작되어온 WTO 농업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DDA)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2002년 2월을 마지막으로 제1, 2단계의 협상을 마치고, 금년 3월부터 협상의 세부원칙 수립에 대한 협상(Modality)이 진행 중에 있다.

향후 협상일정에 따르면 2003년 3월말까지 협상의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5차 WTO 각료회의 까지 국별 농업보조 및 관세감축 이행계획서(일명 CS: Country Schedule)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후 2004년부터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관심 있는 국가간의 다자/양자협상을 거쳐 2004년 말까지는 최종합의를 도출하여 2005년 각 국의 비준을 거친 후 2006년부터 실제 이행에 들어간다는 계획 하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의 진행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상되는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선의 협상결과를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보고서는 최근까지의 DDA 농업협상 중 시장접근분야의 동향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각 쟁점별로 협상대안 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향후 DDA 농업협상의 타결결과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동향에 기초해 파급영향을 검토해 보고 협상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 노력하였다. 연구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아무쪼록 생산자, 농민단체, 정부, 학계 등 DDA 농업협상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 요 약

-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WTO/DDA 농업협상은 지난 GATT체제하의 UR 농업협상과는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현재 WTO/DDA 농업협상은 UR 농업협상에서 도출된 원칙에 따라 시장개방과 농업보조 감축의 폭을 확대하자는 것이 논의의 핵심임. 따라서 WTO/DDA 농업협상은 UR 농업협상보다 논의의 내용이 단순하고 합의가 보다 수월하며,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내농업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보다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
- WTO/DDA 농업협상에서는 UR 농업협상에서와 같이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분야를 협상의 3대 핵심의제(three pillars)로 간주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3대 핵심의제 중에서 시장접근분야가 가장 중요한 의제임. 특히 관세감축의 방식과 폭에 관한 협상결과가 국내농업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 주요 쟁점별 논의 현황

- 관세감축 방식과 폭
  - 주요 국가의 농산물 관세수준을 비교하면 WTO에서 가장 협상력이 큰 미국과 EU의 경우 모두 평균관세율과 고율관세 평균이 각각 30%와 80% 미만이기 때문에 UR방식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때 관세상한이 100% 이내에서 설정될 경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관세상한을 100%로 설정할 경우, 주요 국가들이 그들의 민감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tariff peaks)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관세상한 100%의 설정은 수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이러한 수입국의 어려운 상황과 관세격차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수출국의 주장을 동시에 반영할 경우 UR방식(단순 평균 40%, 최소 20% 감축)을 따르되, 고율관세의 감축폭은 30~50% 수준에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EU의 낙농제품의 관세(관세상한)는 150~21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결과).
- UR 방식과 같이 관세감축의 신축성을 부여하되 관세를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감축율과 최소감축율을 차별화한다든지 혹은 조화공식에 감축방식을 채택하되 선진국, 개도국, 기타 국가로 분류하고 관세상한(상수 a의 값)을 차별화하는 것이 협상대안이 될 수 있음. 한편 조화공식에 따른 감축방식을 채택하되 현행 관세수준별로 관세상한(상수 a의 값)을 차별화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임.
- 시장접근물량(TRQ) 확대와 관리방식
  - 수출국들은 UR 농업협정 이행의 결과 TRQ의 수입이행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TRQ를 확대함은 물론 수입관리방식의 개선을 요구.
  - TRQ 도입 배경은 관세상당치가 수입금지적 관세로 작용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관세가 계속적으로 인하되어 낮아지게 되면 TRQ 설정의 의미는 작아지게 되는 것임. 따라서 TRQ를 대폭 확대하고 TRQ에 적용되는 관세 또한 대폭 감축하자는 수출국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음.
  -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TRQ확대에서는 일부 양허하더라도 관세감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국영무역의 비율이 축소되고 생산자단체에 의한 수입관리가 제한된다면 이론적으로 가장 시장지향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수입권공매제도는 반드시 허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TRQ에 대한 관세수준은 이중가격의 형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차익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다면 in-quota 관세수준의 인하에

대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음.

○ 특별긴급관세제도(Special Safeguard)

- UR이후 관세(상당치)가 계속적으로 감축되어 전반적인 관세수준은 낮아지게 되고 세계시장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입급증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음. 따라서 특별긴급관세제도(SSG)에 일부 문제가 있고 사용국가가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철폐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더욱이 관세가 낮아지면서 시장개방의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되는 시장 접근물량의 확대는 주장하면서 SSG를 폐지하자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주장임.
-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수입급증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산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임. 따라서 현행 SSG는 존치하되 UR 농업협상에서 허용되지 않은 국가, 특히 개도국에게도 허용해야 할 것임.

□ 시나리오별 관세감축의 국내영향과 시사점

○ 시나리오의 설정

- 시나리오 1-1: 종전 UR 농업협상의 관세감축방식에 따르되 최근의 관세감축 협상동향을 감안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단순 평균 40%, 최소20%를 감축하되 관세상한이 없는 경우.
- 시나리오 1-2: 시나리오 1-1과 동일하나 100%의 관세상한을 설정.
- 시나리오 1-3: 시나리오 1-1과 동일하나 200%의 관세상한을 설정.
- 시나리오 1-4: 시나리오 1-1과 동일하나 300%의 관세상한을 설정.
- 시나리오 2-1: 스위스공식을 따르되 미국안대로 25%의 관세상한 설정.
- 시나리오 2-2: 시나리오 2-1과 동일하나, 관세상한을 100%로 설정.

- 시나리오 2-3: 시나리오 2-1과 동일하나, 쌀의 경우 예외를 인정받아최소 감축 20%만 하는 경우.
  - 시나리오 2-4: 시나리오 2-2과 동일하나, 쌀의 경우 예외를 인정받아최소 감축 20%만 하는 경우.
- 시나리오별 관세감축의 파급 영향
- 관세감축방식별 농업총소득의 변화 전망치에 기초해 볼 때 관세감축으로 인한 농업부문 파급영향은 쌀이 감축에서 예외를 받거나 또는 최소 감축을 하는 경우(이는 곧 고율관세가 유지되는 경우와 동일)가 아니라면 스위스방식을 택하든 UR방식을 택하든 관세감축방식에 관계없이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봄.

관세감축별 농업총소득(명목) 변화

단위: 조원

	UR 방식				SWISS 방식			
	관세상한 없는 경우	관세상한 100%	관세상한 200%	관세상한 300%	관세상한 25%	관세상한 100%	관세상한 25%+ 쌀 예외	관세상한 100%+ 쌀 예외
2002	16.1				16.1			
2005	16.4				16.4			
2006	16.3	15.6	15.9	16.2	15.2	15.3	16.1	16.2
2007	16.5	14.8	15.7	16.3	14.1	14.3	16.0	16.1
2008	16.0	13.5	14.7	15.8	12.5	12.8	15.3	15.5
2009	16.0	13.0	14.6	15.8	NA	NA	NA	15.4
2010	15.6	12.0	13.9	15.3	NA	NA	NA	NA

주 1) Swiss공식 적용 시 2008년 이후 농업총소득이 NA로 표시된 것은 급격한 관세감축으로 일부 품목의 소득이 마이너스로 추산되어 농업총소득 계산을 하지 않았음.

- 다만 동일한 관세상한수준에서 스위스공식에 의한 농업총소득의 감소가 UR방식에 의한 농업총소득의 감소보다 크기 때문에, 동일한 관세상

한 내에서 UR방식에 따른 관세감축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UR방식에 따라 관세를 감축한다고 해도 핵심은 관세상한수준이기 때문에(특히 쌀 문제) 관세상한이 낮게 설정된다면(예 200% 이하) 그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봄.

- 결국 관세감축에 있어서 쌀의 관세감축 예외(또는 최소 감축)나 높은 관세율의 유지가 우리의 핵심 관심이 되어할 것으로 판단.

#### □ 특별긴급관세조치(SSG: Special Safe Guard)의 합축성

- 관세감축을 UR방식에 따른다고 해도 SSG를 발동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농업총소득의 흐름에 매우 큰 격차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 별로 SSG를 발동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농업총소득의 흐름을 비교해 보면 SSG를 발동할 경우(특히 물량기준) 시장개방초기(특히 2006년과 2007년) 추가관세의 부과로 수입량을 일정 수준이내로 제한하는 수입급증 억제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0년의 농업총소득은 최대 약 1조 6천억의 차이가 발생

SSG 발동에 따른 관세감축별 농업총소득(명목) 변화

단위: 조원

	UR 방식				UR 방식+SSG			
	관세상한 없는경우	관세상한 100%	관세상한 200%	관세상한 300%	관세상한 없는경우 +SSG	관세상한 100% +SSG	관세상한 200% +SSG	관세상한 300% +SSG
2002	16.1				16.1			
2005	16.4				16.4			
2006	16.3	15.6	15.9	16.2	16.2	15.9	15.9	16.2
2007	16.5	14.8	15.7	16.3	17.5	16.2	17.2	17.4
2008	16.0	13.5	14.7	15.8	17.8	14.7	16.2	17.5
2009	16.0	13.0	14.6	15.8	17.8	13.9	16.0	17.6
2010	15.6	12.0	13.9	15.3	17.2	12.5	14.9	17.0

- 스위스공식에 따른다고 해도 SSG의 발동여부에 따라 농업총소득의 차이는 UR방식을 따를 경우와 유사하게 약 1조 5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표 9 참조) 관세감축방식에 관계없이 SSG는 농업총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억제하는 중요한 보완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SSG 발동에 따른 농업총소득의 변화: Swiss방식 적용

단위: 조원

	SWISS 방식 + SSG				
	관세상한 25%	관세상한 100%	관세상한 100%+SSG	관세상한 200%	관세상한 200%+SSG
2002	16.1				
2005	16.4				
2006	15.2	15.3	15.5	15.7	15.8
2007	14.1	14.3	15.9	15.1	16.8
2008	12.5	12.8	14.4	13.8	15.7
2009	NA	NA	NA	NA	NA
2010	NA	NA	NA	NA	NA

- 특히 고율관세가 유지될 경우 수입물량 급증시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관세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SSG는 고율관세와 연동되어 그 효과가 매우 클 수 있음.

## □ 시사점

- 고율 관세의 유지가 최우선 전략이 되어야
  - 쌀을 포함하여 우리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품목의 대부분은 국내외 가격차이가 매우 커, 관세화이행에 따라 고율관세가 설정되었으며, 따라서 이들 민감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의 유지는 우리 농업보호의 핵심임.



- 따라서 관세의 감축방식과 감축폭, 이행기간도 중요하나, 낮은 수준의 관세상한이 설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향후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
  - 만일 고율관세의 유지가 힘들다면 가장 중요한 품목에 예외를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
  - 특히 2004년 쌀 재협상 결과 만일 쌀을 관세화하여 시장을 개방할 경우, 설정된 관세상당치는 현행 DDA 농업협상에서 합의될 관세감축방식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고율관세의 유지 또는 예외품목의 획득이 우리나라의 핵심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임.
- SSG의 현행 존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
- DDA 농업협상이 관세를 대폭 감축하는 방향으로 타결되고, 전반적인 관세수준 또한 계속 낮아질 것이므로, 향후 농산물 수입급증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임. 따라서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입국의 권리인 SSGF의 현행대로의 존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
  - 특히 2004년 쌀 재협상 결과 만일 쌀을 관세화할 경우 개방초기 쌀의 수입급증을 억제할 수 있는 보완장치로서의 SSG가 가는 의미는 매우 중요.
- 개도국 우대조치의 확보는 고율관세의 유지를 전제로
- 감축폭과 이행기간에서 개도국 우대조치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나 만일 낮은 수준의 관세상한이 설정된다면 개도국 우대조치 확보의 혜택은 크게 상실됨.
  - 따라서 개도국 우대조치를 받느냐 아니냐의 여부 자체보다는 그 내용이 더욱 중요할 것인 바 개도국 우대에 고율관세의 유지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

- 의장의 종합보고서(Overview paper) 배포이후 2003년 3월까지의 협상에 전력을 기울여야
  - 2003년 이후 협상이 계속 진행된다고 해도 과거의 예를 볼 때 향후협상은 의장의 종합보고서 및 2003년 2월중에 제시될 1차 초안의 기본틀의 범위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NTCs등 우리의 관심사항이 종합보고서 및 1차 초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전력해야 함.

## 목 차

제1장 WTO/DDA 농업협상 개요 .....	1
제2장 주요 쟁점별 논의 동향과 협상 대안 .....	4
1. 관세감축 방식과 폭 .....	4
1.1. 개요 .....	4
1.2. 각국의 입장 .....	5
1.3. 주요국의 관세수준 비교 .....	6
1.4. 주요국 제안에 대한 평가와 협상 대안 .....	9
2. 시장접근물량 (TRQ) 확대와 관리방식 .....	11
2.1. 개요 .....	11
2.2. 각국의 입장 .....	12
2.3. 주요국 제안에 대한 평가와 협상 대안 .....	13
3. 특별긴급관세제도(Special Safeguard) .....	14
3.1. 개요 .....	14
3.2. 각국의 주장 .....	14
3.3. 주요국 제안의 평가 및 협상 대안 .....	15
제3장 시나리오별 관세감축의 국내영향과 시사점 .....	17
1. 시나리오 설정 .....	17
2. 시나리오별 관세감축의 파급 영향 .....	19
2.1. 관세 감축방식별 농업총소득의 흐름 .....	19
2.2. 특별긴급구제조치의 영향 .....	23
3. 시사점 .....	26

## 표 목 차

표 1. 주요 국가의 농산물 평균관세수준 비교 .....	6
표 2. 주요국의 고율관세 현황(2000년 기준) .....	7
표 3. 국별 고율관세 품목의 수와 비중(종가세 기준) .....	8
표 4. 주요국의 가공도별 관세수준 비교 .....	9
표 5. 관세구간별 차별적인 관세감축방식 .....	10
표 6. 참조가격변동에 따른 SSG의 발동기준과 관세부과 수준 조정 .....	15
표 7. 관세감축별 농업총소득(명목) 변화 .....	21
표 8. SSG 발동에 따른 관세감축별 농업총소득(명목) 변화 .....	24
표 9. SSG 발동에 따른 농업총소득의 변화: Swiss방식 적용 .....	25

## 그림 목 차

그림 1. 우리나라의 농업보호 수준 .....	2
그림 2. 관세상한에 설정에 따른 농업총소득의 변화: UR방식 적용 .....	20
그림 3. 관세상한에 설정에 따른 농업총소득의 변화: Swiss방식 적용 .....	22
그림 4. SSG 발동에 따른 농업총소득의 변화: UR방식 적용 .....	25
그림 5. SSG 발동에 따른 농업총소득의 변화: Swiss방식 적용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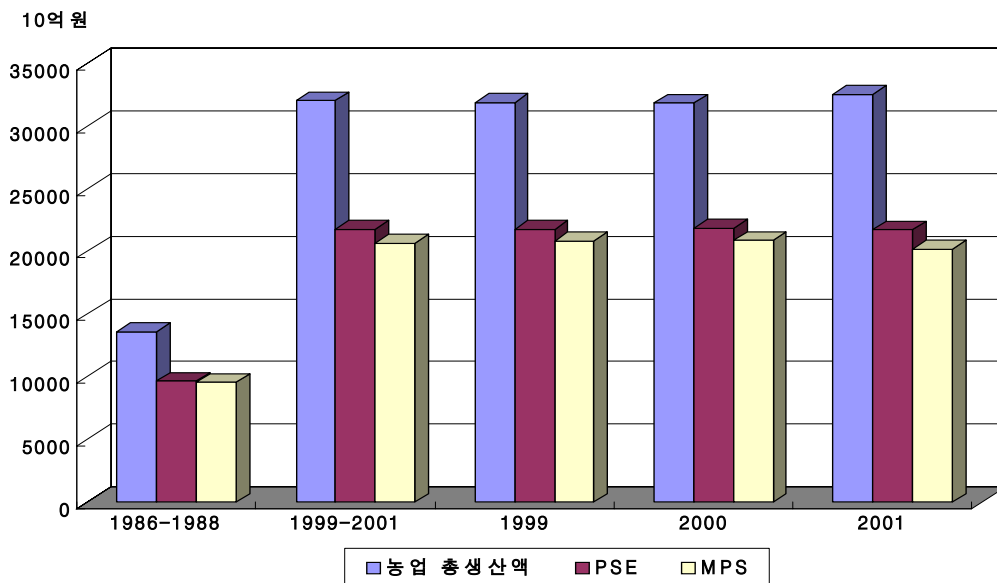
## 제 1 장

# WTO/DDA 농업협상 개요

-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WTO/DDA 농업협상은 지난 GATT체제하의 UR 농업협상과는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UR 농업협상에서는 농산물 무역에 가장 많이 원용되었던 각종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관세조치로만 수입을 규제하는 포괄적 관세화(comprehensive tariffication)가 채택되었으며, GATT체제의 발족 이후 최초로 농업보조금을 국제규정하에서 규제·감축하자는 데 합의하였음.
  - 현재 WTO/DDA 농업협상은 UR 농업협상에서 도출된 원칙에 따라 시장 개방과 농업보조 감축의 폭을 확대하자는 것이 논의의 핵심임.
  - 따라서 WTO/DDA 농업협상은 UR 농업협상보다 논의의 내용이 단순하고 합의가 보다 수월하며,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내농업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보다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
- WTO/DDA 농업협상에서는 UR 농업협상에서와 같이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분야를 협상의 3대 핵심의제(three pillars)로 간주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3대 핵심의제 중에서 시장접근분야가 가장 중요한 의제임.
- 그 동안 우리나라의 농업보호는 가격지지 등 국내농업보조보다는 정책 비용이 저렴한 수입제한 등 국경보호조치에 상당부분 의존.
- 2001년 기준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자보호수준(PSE; Producer Support Estimate)은 21조 7,280억원으로 이중 시장가격지지를 포함한 국경보호 조치에 의한 보호수준이 20조 1,770억원에 달해 PSE의 93%를 차지하고 있음(그림 1 참조).

그림 1. 우리나라의 농업보호 수준



자료: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2002, OECD.

- 미국은 2002년 농업법에서 과거의 부족불제도와 유사한 감축대상 보조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소득안정정책을 도입하는 등 DDA 농업협상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국내보조를 대폭 확대하여 협상에서의 입지가 약화된 관계로 시장접근분야의 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WTO/DDA 농업협상 시장접근분야의 주요 쟁점은 관세의 감축방식과 폭, 시장접근물량(TRQ)의 확대와 이에 적용되는 관세의 감축, 시장접근물량(TRQ)의 수입관리방법, 특별긴급관세제도(SSG), 관세부과방식 및 수입국영무역제도 등임.
  - 이와 같은 시장접근분야의 협상 쟁점은 UR 농업협상에서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관세화하는 과정에서 보완장치로서 도입된 TRQ와SSG 등의 이행상의 문제점과 관련되는 것들임.
  - 따라서 WTO/DDA 농업협상의 시장접근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관세감축에 관한 것이며, 관세감축의 방식과 폭에 관한 협상결과가 국내농업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이 자료에서는 지금까지의 WTO/DDA 농업협상 중 시장접근분야 세부 협상원칙(Modality)에 관한 논의 동향을 쟁점별로 검토, 분석하고 협상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관세감축방식과 폭에 관한 협상이 갖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관세 감축이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계측하고 이에 기초하여 협상대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제 2 장

# 주요 쟁점별 논의 동향과 협상 대안

### 1. 관세감축 방식과 폭

#### 1.1. 개요

□ WTO 회원국의 농산물관세의 수준과 구조는 UR 농업협상에서 관세화 과정에 따라 결정됨.

- 비관세장벽의 보호효과에 상응하는 관세수준(관세상당치)을 허용한 결과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에서 높은 관세(상당치)가 설정됨. 그러나 높은 수준의 관세상당치를 인정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감축하자고 합의한 것은 급격한 시장개방으로 초래될 수 있는 충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임.
- 수입국들은 관세화에 의해 결정된 일부 품목의 높은 수준의 관세는 해당 국가에 부여된 일종의 권리라고 주장.

- 수출국들은 UR 농업협상에서 관세를 단순평균방식(단 품목별 최소감축율은 설정)에 기초하여 감축한 결과 품목간, 가공도별로 관세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고 주장.
  - 따라서 품목별, 가공도별, 국가별 관세격차를 해소하는 문제가 관세감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
  
- 관세감축 폭에 대해서 수출국들은 농산물의 관세가 공산품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상태이므로, 산업간의 관세격차를 위해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임(농업과 비농업의 동등 취급; equal footing).

## 1.2. 각국의 입장

### □ 감축방식

- UR 방식: EU, 폴란드, 멕시코, 스위스, 일부 개도국.
- 관세조화감축 및 상한설정: 미국(스위스공식과 관세상한 25% 제안) 캐나다, ASEAN, 인도 등.
- 혼합방식(일률감축+관세상한 설정): 케언즈 그룹 및 수출개도국.
- 신축적 감축(농업과 품목의 특성 감안한): 한국, 일본, 노르웨이.

### □ 감축폭

- 대폭 감축 : 미국, 케언즈 그룹.
- 소폭 감축 : 한국, 일본, 노르웨이 등 NTC국가.

### 1.3. 주요국의 관세수준 비교

□ 주요 국가의 농산물 관세수준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평균관세율과 관세화품목의 고율관세의 평균이 각각 노르웨이와 일본 다음으로 높음.

- 관세의 분산과 고율관세도 일본과 호주가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는 평균관세율과 고율관세의 절대수준이 모두 높아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무역상대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임(이상 표 1 참조).

표 1. 주요 국가의 농산물 평균관세수준 비교

단위: %

국 가	농산물 평균관세율	관세화 대상품목		고관세정도 <sup>1</sup>
		시장접근관세	고율관세	
미 국	12	10	52	4.3
E U	30	17	78	2.6
일 본	58	22	422	7.3
노르웨이	142	216	239	1.7
호 주	4	10	25	6.3
태 국	35	27	91	2.6
한 국	66	19	314	4.8

주 1) 일반적으로 고율관세란 평균관세율의 3배이상의 관세율을 뜻하나 여기에서는 고율관세를 평균관세율로 나눈 값임.

자료: USDA-ERS, Profiles of Tariffs in Global Agricultural Markets, OECD, Review of Tariff Synthesis Report에서 재구성.

- WTO에서 가장 협상력이 큰 미국과 EU의 경우 모두 평균관세율과 고율관세 평균이 각각 30%와 80% 미만이기 때문에 UR방식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때 관세상한이 100% 이내에서 설정될 경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관세상한 100%의 스위스공식에 의해 관세를 감축할 경우 대부분의 품목의 관세가 20% 내외에 몰려 있어 관세인하 효과가 작기 때

문에 관세상한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평균관세율 수준도 인하하고 고율관세도 상당 수준 감축할 수 있는 40%~60% 수준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UR방식이 채택될 경우 관세상한이 100%이내로 설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스위스공식이 채택된다면 관세상한과 관련하여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관세상한을 100%로 설정할 경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은 평균관세율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이며, 주요 국가들이 그들의 민감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tariff peaks)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관세상한 100%의 설정은 수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표 2, 표 3 참조).

표 2. 주요국의 고율관세 현황(2000년 기준)

	품 목	세 율	평균수입가격대비 종가관세 상당치
미 국	탈 지 분	101.8 ¢/kg	120%
	버 터	193.6 ¢/kg	140%
	땅 콩	192.7%	-
E U	버 터	2,962 ECU/ton	300%
	바 나 나	850 ECU/ton	300%
일 본	쌀	341 ¥/kg	490%
	땅 콩	617 ¥/kg	500%
	서 류	2,796 ¥/kg	990%
스 위 스	버 터	1,932 프랑/100kg	1,000%
	치 커 리	886 프랑/100kg	1,000%
	셀 러 리	692 프랑/100kg	950%
캐 나 다	탈 지 분	237.2%	-
	버 터	351.4%	-
	닭 고 기	292.9%	-
태 국	탈 지 분	240%	-
	생 사	257%	-
	양 파 종 자	242%	-
한 국	매 니 옥	976%	-
	참 기 림	693%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WTO 농업교섭의 과제와 논점(2000).

-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낙농제품이 고율관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EU와 캐나다의 경우 낙농제품에 300%에 상당한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있음.
- 한국과 일본의 일부 품목에 상당한 수준의 고율관세를 유지
- 이러한 수입국의 어려운 상황과 관세격차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수출국의 주장을 동시에 반영할 경우 UR방식(단순 평균 40%, 최소 20% 감축)을 따르되, 고율관세의 감축폭은 30~50% 수준에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EU의 낙농제품의 관세(관세상한)는 150~21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결과).

표 3. 국별 고율관세 품목의 수와 비중(증가세 기준)

국 가	관세율 분포 및 비중
한 국	46-68%; 144품목(11%), 71-630%; 129품목(10%), 754-888%; 28품목(2%)
EU	30-75%; 29품목(2%)
호 주	20-29%; 13품목(2%)
일 본	34-114%; 33품목(3%)
캐 나 다	49-95%; 3품목(0.3%), 154-314%; 85품목(9%)
미 국	131-164%; 5품목(0.5%)
뉴질랜드	25.6-35.2%; 26품목(3%)
태 국	36-94%; 223품목(31%), 125-226%; 14품목(2%)

자료: 국별 관세율 표(2000).

- 다음으로 가공도별 관세누증의 경우를 보면 호주, 일본, EU, 미국의 순으로 관세누증의 정도가 크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역관세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표 4 참조).
- 따라서 우리나라는 가공도별 역관세 구조를 크레디트로 인정받거나 고

율관세 감축에서 이를 감안하는 관세감축방식을 제안해 볼 수도 있을 것임.

- 가공도별 관세의 누진정도에 따라 유지할 수 있는 고율관세의 비중을 달리하거나 관세상한의 수준을 차별화.

표 4. 주요국의 가공도별 관세수준 비교

단위: %

국 가	1 차 산 품	가 공 품	관세누진정도
미 국	4	5	1.25
E U	4	11	2.75
일 본	4	15	3.75
호 주	1	6	6.00
브 라 질	34	36	1.06
한 국	72	55	0.76

자료: WTO/AIE/S11, Uruguay Round Agricultural Tariff Reductions for Selected WTO Members(1998).

#### 1.4. 주요국 제안에 대한 평가와 협상 대안

- 미국의 관세상한 25%의 스위스공식제안이나 호주 등 케언즈 그룹의 일률감축과 공식감축을 혼합하여 관세를 대폭적으로 감축하자라는 제안은 모두가 UR 농업협정문 제20조의 ‘근본적인 농업개혁을 위한 상당하고 점진적인 농업보호와 보조의 감축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는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 또한 DDA 농업협상에서 NTC를 고려한다는 점과도 배치.
- 수출입국의 상이한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은 품목별, 가공도별 관세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고율관세는 더 큰 폭으로 감축하되 관세감축에서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임.

## □ 협상 대안

- UR 방식과 같이 관세감축의 신축성을 부여하되 관세를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감축율과 최소감축율을 차별화 함(표 5 참조).
  - 가령 다음과 같이 관세감축을 품목별로 차별화 할 수 있을 것임.
  - 개도국의 경우 각 감축율의 2/3.

표 5. 관세구간별 차별적인 관세감축방식

관 세 구 간	평 균 감 축 율	최 소 감 축 율
0% ~ 30%	24%	10%
30% ~ 60%	36%	15%
60% ~	48%	20%

- 또 다른 협상대안으로서는 조화공식에 감축방식을 채택하되 선진국, 개도국, 기타 국가로 분류하고 관세상한(상수  $a$ 의 값)을 차별화하는 것임.
  - 예 : 선진국;  $a=50$ , 개도국;  $a=150$ , 기타국가(중진국);  $a=100$
- 한편 조화공식에 따른 감축방식을 채택하되 현행 관세수준별로 관세상한(상수  $a$ 의 값)을 차별화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임.
  - 예 : 0% ~ 50% :  $a=25$ , 50% ~ 100% :  $a=50$   
100% ~ 200% :  $a=100$ , 200% 이상 :  $a=150$  등.
- 가공도별 관세누증의 문제는 결국 유효보호율(effective protection rate)과 가공품의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보호되는가가 중요하므로 각국의 유효보호율 격차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공품에 대한 관세감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안.
  - 우리나라의 경우 가공품의 절대적인 관세수준은 높지만 원료 농산물의 관세가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공품의 유효보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2. 시장접근물량(TRQ) 확대와 관리방식

### 2.1. 개요

- UR 농업협상에서 시장접근물량(TRQ)이 설정된 배경은 당시까지 존치되었던 비관세장벽의 보호효과에 상응하는 높은 관세상당치를 인정한 결과 이것이 수입가격의 상승 시 수입금지적인 관세로서 작용하여 수출국들의 시장접근기회가 오히려 축소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음.
- 따라서 일정물량(MMA; 기준기간(1986-88년)동안 수입이 없었거나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미만이었던 품목은 3%를 시장접근물량으로 설정하여 5%까지 확대하고, CMA; 기준기간동안의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이상인 품목은 현 수준 유지)에 대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함.
- 그러나 일정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중가격 형성에 따른 수입관리의 필요성으로 각국은 다양한 방식에 따라 TRQ를 관리해 왔음.
- 수출국들은 UR 농업협정 이행의 결과 TRQ의 수입이행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TRQ를 확대함은 물론 수입관리방식의 개선을 요구.
- TRQ 도입 배경은 관세상당치가 수입금지적 관세로 작용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관세가 계속적으로 인하되어 낮아지게 되면 TRQ 설정의 의미는 작아지게 되는 것임. 따라서 TRQ를 대폭 확대하고 TRQ에 적용되는 관세 또한 대폭 감축하자는 수출국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음.



- 한편 총수입량은 관세(관세상당치) 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시장접근물량의 확대나 수입관리 방식에 대한 규정의 강화는 국내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다만 수입관리방식이 변경될 경우 수입차익의 환수와 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것임.
- 그러나 시장접근물량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관세가 수입제한조치로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TRQ확대는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CMA 관리 품목).

## 2.2. 각국의 입장

### □ TRQ 확대

- 대폭 확대: 케언즈 그룹.
-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전제로 소폭 확대: 미국 (이행최종연도 TRQ의 20% 확대).
- 최근 소비량을 고려하여 조정 : 캐나다, 일본.
- 선진국의 개도국 농산물에 대한 TRQ 확대 : 쿠바, 인도 등 개도국.

### □ In-quota 관세

- TRQ 수입실적에 근거하여 in-quota 관세 감축 : 미국.
- TRQ에 대한 관세 철폐 : 캐나다.
- in-quota 관세수준은 해당 품목의 국제수급, 각 품목의 국내소비와 같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일본.

### □ TRQ 관리

- 엄격한 관리규정 제정 : 미국, 케언즈 그룹, 개도국.
- 신축적인 관리지침 제정 :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 2.3. 주요국 제안에 대한 평가와 협상 대안

### □ TRQ 확대

- 최근 미국은 최종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TRQ를 20% 확대를 주장.
  - 미국의 이와 같은 주장은 관세를 스위스공식에 의해 25%로 상한을 설정하여 감축하자는 제안과 크게 대조되는 것임.
  - 미국은 상대국의 시장은 최종적으로 관세감축에 의해 결정되고 TRQ는 수입개방의 확실성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국한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듯함. 또한 미국은 TRQ 확대의 폭을 낮추어 제안함으로써 관세감축율을 높히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TRQ확대에서는 일부 양허하더라도 관세감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 TRQ 수입관리

- TRQ 수입관리의 방식 중 수출국들이 가장 수입제한의 가능성이 높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되는 것은 국영무역, 생산자단체에 의한 수입관리임.
  - 수입관리의 기본목적은 해당 품목의 수급을 조절하고 수입차익을 적절히 환수하여 농업부문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부합되는 제도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음.
  - 국영무역의 비율이 축소되고 생산자단체에 의한 수입관리가 제한된다면 이론적으로 가장 시장지향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수입권공매제도는 반드시 허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 In-quota 관세

- TRQ에 대한 관세수준은 이중가격의 형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차익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다면 in-quota 관세수준의 인하에 대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음.

- 아울러 우리나라는 TRQ관세가 상대국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TRQ관세의 감축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 3. 특별긴급관세제도(Special Safeguard)

#### 3.1. 개요

- 특별긴급관세제도(SSG)는 UR 농업협상에서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관세화함에 따라 세계시장가격의 하락에 따라 수입이 급증하는 폐단을 방지, 관세화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비관세 무역장벽이 철폐되고 관세조치만 가동될 경우 세계시장의 불안정성이 국내시장에 그대로 전가(transmission)됨.
- UR이후 관세(상당치)가 계속적으로 감축되어 전반적인 관세수준은 낮아지게 되고 세계시장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입급증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음.
  - 따라서 특별긴급관세제도(SSG)에 일부 문제가 있고 사용국가가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철폐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더욱이 관세가 낮아지면서 시장개방의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되는 시장 접근물량의 확대는 주장하면서 SSG를 폐지하자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주장임.

#### 3.2. 각국의 주장

- 폐지 : 미국, 케언즈 그룹, 수출개도국.
  - 일부 개도국은 개도국의 농산물에 대한 SSG 발동금지 요구.

- 존치 : 한국, EU, 일본 등 NTC 국가.
- 신규허용 : 일부 개도국(터키, 파키스탄 등).
- 일부 문제점 보완 : 스위스.
  - 참조가격을 최근 3년 평균가격으로 조정.

### 3.3. 주요국 제안의 평가 및 협상 대안

-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수입급증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산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임.
  - 따라서 현행 SSG는 존치하되 UR 농업협상에서 허용되지 않은 국가, 특히 개도국에게도 허용해야 할 것임.
- 기존에 관세화 되어 SSG의 대상이 되었던 전통적인 농산물(주로 곡물)의 발동기준으로서 참조가격의 변동폭과 추가관세의 수준에 관한 계수를 관세가 상당한 정도 낮아지고 수입급증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임(표 6 참조).

표 6. 참조가격변동에 따른 SSG의 발동기준과 관세부과 수준 조정

현행 농업협정의 발동기준	조정 후 발동 기준
$dp \leq 10\%$ , 관세인상불가	$dp \leq 5\%$ , 관세인상불가
$10\% < dp \leq 40\%$ , 10% 초과분의 30% 관세인상	$5\% < dp \leq 30\%$ , 5% 초과분의 50% 관세인상
$40\% < dp \leq 60\%$ , 40% 초과분의 50% 관세인상	$30\% < dp$ , 30% 초과분의 70% 관세인상
$60\% < dp \leq 75\%$ , 60% 초과분의 70% 관세인상	—
$75\% < dp$ , 75% 초과분의 90% 관세인상	—

- 기존 GATT 1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피해구제제도(Safeguard)의 경우 적용요건이 엄격하고 발동결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계절성이 있고 부패가능한 농산물의 산업피해에 적합하지 않은 반면, 농업협정의 SSG는 수입량 및 수입가격 기준에 의해 자동적으로 발동되므로 계절적이고 부패가능한 농산물의 산업피해구제에 적합한 제도임.
- 특히 부패가능 농산물에 대한 SSG 발동과 추가관세 인상에 관한 기준을 수입급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
- 부패가능 농산물의 경우 참조가격(수입가격)의 하락을 발동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수입물량의 증가를 발동기준으로 바꾸고 현행 농업협정문의 발동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할 것임(미국의 제안은 이러한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임).

## 제 3 장

# 시나리오별 관세감축의 국내영향과 시사점

### 1. 시나리오 설정

- 현행 WTO/DDA 농업협상 시장접근분야 관세감축 관련 논의 동향을 고려하여 향후 예상되는 협상타결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먼저 종전의 UR방식대로 관세감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스위스공식에 의해서 관세감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크게 대별하고 관세상한의 설정 정도에 따라 다시 세분하였음.
- UR방식에 따르는 경우를 시나리오 1로 설정하였음.
  - UR방식에 따라 관세를 감축하되 과거의 UR방식과 동일하게 관세상한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를 시나리오 1-1로 설정함. 시나리오 1-1의 경우가 우리에게는 가장 유리한 경우로 볼 수 있음.
  - UR방식을 따라 관세를 감축한다고 해도 고율관세 품목에 대해서 관세상한이 설정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관세상한 정도에 따라 시나리오 1-2와 시나리오 1-3, 시나리오 1-4로 구분.
  - 시나리오 1-2는 UR방식을 따라 관세를 감축하되 관세상한이 100% 설

정된 경우이고, 시나리오 1-3과 1-4는 관세상한이 각각 200%와 300%인 경우임.

- 한편 스위스방식에 따라 경우를 시나리오 2로 설정하였음.
  - 스위스방식에 따라 관세를 감축하되 최근 미국이 제안한 관세상한 25%안을 시나리오 2-1로 설정. 시나리오 2-1은 우리에게 최악의 경우로 현재까지의 논의 동향과 주요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고율관세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대로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파급영향의 최대치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자료로써 의미를 부여하여 이를 고려하였음.
  - 시나리오 2-2는 비록 스위스공식이 채택된다고 해도 관세상한이 미국의 제안대로 25%로 설정되기보다는 각국의 민감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 수준을 고려하여 관세상한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경우임. 이를 위해 스위스공식에서 관세상한을 100%로 설정하는 것을 시나리오 2-2로 설정.
  - 한편 스위스공식을 따른다고 해도 모든 품목에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특정 민감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도 고려하였음. 일본이나 대만의 쌀의 경우 종가세 환산 관세수준은 400% 이상으로 관세상한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100%로 설정된다고 해도 그 파급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외인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예외 품목의 선정은 “예외”란 성격과 식량안보 및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고려하여, 우리 농업의 여건상 가장 중요한 쌀 한 품목만을 설정하였음.
  - 이에 따라 시나리오 2-3과 2-4에서는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감축하되 쌀, 한 품목에 대한 관세상한 예외를 인정받아 최소감축 20%를 하는 경우를 설정하였음.
- 이상의 시나리오를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① 시나리오 1-1: 종전 UR 농업협상의 관세감축방식에 따르되 최근의 관세 감축 협상동향을 감안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단순 평균 40%, 최소20%를 감축하되 관세상한이 없는 경우.
- ② 시나리오 1-2: 시나리오 1-1과 동일하나 100%의 관세상한을 설정.
- ③ 시나리오 1-3: 시나리오 1-1과 동일하나 200%의 관세상한을 설정.
- ④ 시나리오 1-4: 시나리오 1-1과 동일하나 300%의 관세상한을 설정.
- ⑤ 시나리오 2-1: 스위스공식을 따라 관세를 감축하되 미국 제안 대로 25%의 관세상한을 설정.
- ⑥ 시나리오 2-2: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감축하되 관세상한을 100%로 설정.
- ⑦ 시나리오 2-3: 시나리오 2-1과 동일하게 관세상한 25%를 설정하되, 쌀의 경우 예외를 인정받아 최소감축 20%만 하는 경우.
- ⑧ 시나리오 2-4: 시나리오 2-2과 동일하게 관세상한 100%를 설정하되, 쌀의 경우 예외를 인정받아 최소감축 20%만 하는 경우.

## 2. 시나리오별 관세감축의 파급 영향

### 2.1. 관세 감축방식별 농업총소득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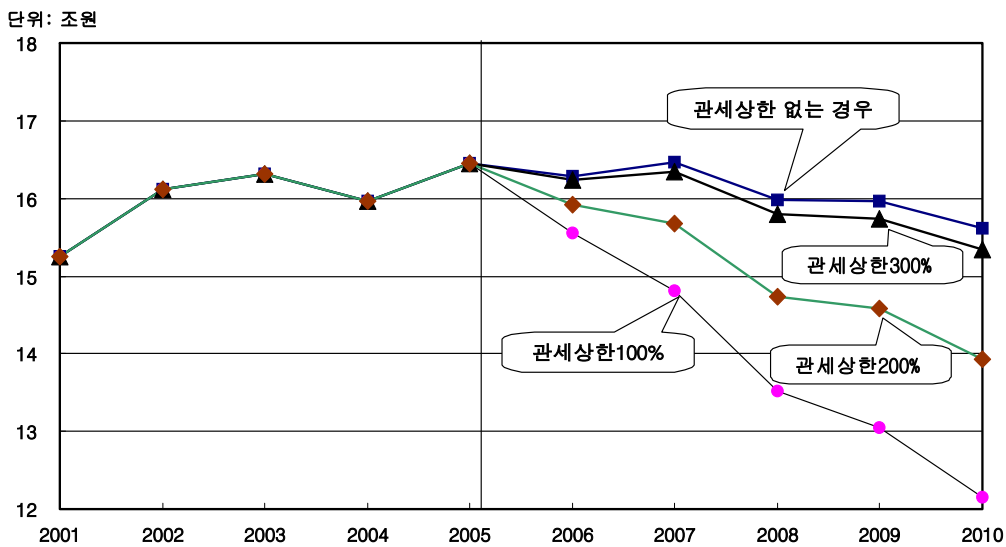
#### □ 시나리오 1 : UR방식이 채택될 경우

- UR 농업협상에서처럼 관세감축 시 관세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단순



평균 40%, 최소감축 20%로 관세를 감축하는 시나리오 1-1에 따를 경우 농업총소득(명목)은 2002년 16조 1천억원(추정치) 수준에서 연평균 0.4%의 속도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현재보다 약 5천억원 줄어든 15조 6천억원이 될 것으로 나타남(표 7, 그림 2 참조).

그림 2. 관세상한에 설정에 따른 농업총소득의 변화: UR방식 적용



- UR 방식에 따르되 관세상한을 100%로 설정하는 시나리오 1-2의 경우는 농업총소득이 2010년 12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2002년 추정 농업총소득보다 약 4조원(약 25%)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UR 방식을 따르되 관세상한을 200%, 300%로 인상한 시나리오 1-3과 1-4의 경우는 2010년 농업총소득이 13조 9천억원과 15조 3천억원으로 나타나 2002년 농업총소득과 각각 2조 2천억원, 8천억원 차이를 보였음.
- 한편 시나리오 1안에서 농업총소득 흐름의 차이를 볼 때 비록 UR방식

에 따라 관세를 감축한다고 해도 시나리오1-1과 1-2를 비교하면 2010년 농업총소득면에서 시나리오 1-2가 시나리오 1-1보다 약 3조 6천억원 적어 관세상한이 100%로 설정될 경우 농업총소득의 감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관세감축별 농업총소득(명목) 변화

단위: 조원

	UR 방식				SWISS 방식			
	관세상한 없는 경우	관세상한 100%	관세상한 200%	관세상한 300%	관세상한 25%	관세상한 100%	관세상한 25%+ 쌀 예외	관세상한 100%+ 쌀 예외
2002	16.1				16.1			
2005	16.4				16.4			
2006	16.3	15.6	15.9	16.2	15.2	15.3	16.1	16.2
2007	16.5	14.8	15.7	16.3	14.1	14.3	16.0	16.1
2008	16.0	13.5	14.7	15.8	12.5	12.8	15.3	15.5
2009	16.0	13.0	14.6	15.8	NA	NA	NA	15.4
2010	15.6	12.0	13.9	15.3	NA	NA	NA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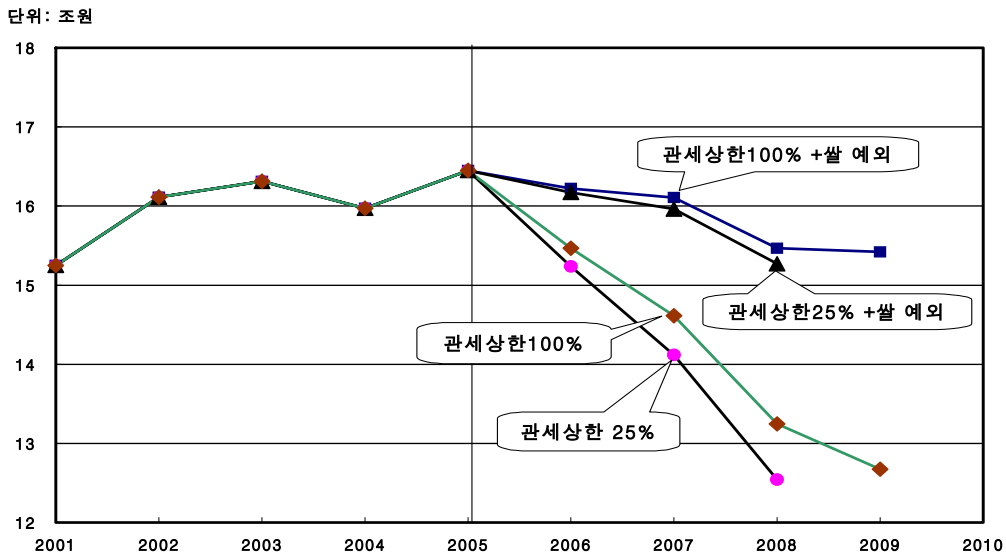
주 1) Swiss공식 적용 시 2008년 이후 농업총소득이 NA로 표시된 것은 급격한 관세감축으로 일부 품목의 소득이 마이너스로 추산되어 농업총소득 계산을 하지 않았음.

#### □ 시나리오 2: 스위스공식이 채택될 경우

- 스위스공식을 따라 관세를 감축하되 관세상한을 25%로 설정하는 시나리오 2-1의 경우 농업총소득의 감소가 가장 커 2008년 12조 5천억으로 나타났음. 2010년 농업총소득은 2008년까지 추세를 적용해 볼 때 10조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표 7 참조).
- 관세상한에 융통성을 인정하여 상한을 100%로 인상하는 시나리오 2-2의 경우 2008년 농업총소득은 12조 8천억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11조 5천억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UR방식을 따르되 관세상한을 100%로 설정하는 시나리오 1-2에 비해 약 5천억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동일한 관세상한에서 보면 스위스방식보다는 UR방식이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 관세상한에 설정에 따른 농업총소득의 변화: Swiss방식 적용



- 스위스공식을 따라 관세를 감축하되 관세상한을 25%로 설정하는 대신 쌀에 감축예외를 인정하여 최소감축 20%를 하는 시나리오 2-3의 경우 2008년 농업총소득이 15조 3천억으로 나타났으며, 시나리오 2-4의 경우 2008년 농업총소득이 15조 5천억으로 나타나, 쌀의 감축예외 여부에 따라 농업총소득은 약 2조8천억에서 3조의 차이가 발생.
- 한편 스위스공식과 UR방식을 비교하면,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감축한다고 해도 쌀이 예외를 받거나 최소감축을 할 경우는 UR공식에 따

라 감축하되 관세상한이 200%~300%인 경우와 유사할 것으로 보임.

## □ 결 론

- 관세감축방식별 농업총소득의 변화 전망치에 기초해 볼 때 관세감축으로 인한 농업부문 영향은 쌀이 감축에서 예외를 받거나 또는 최소감축을 하는 경우(이는 곧 고율관세가 유지되는 경우와 동일)가 아니라면 스위스방식을 택하든 UR방식을 택하든 관세감축방식에 관계없이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봄.
- 다만 동일한 관세상한수준에서 스위스공식에 의한 농업총소득의 감소가 UR방식에 의한 농업총소득의 감소보다 크기 때문에, 동일한 관세상한 내에서 UR방식에 따른 관세감축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UR방식에 따라 관세를 감축한다고 해도 핵심은 관세상한수준이기 때문에(특히 쌀 문제) 관세상한이 낮게 설정된다면(예 200% 이하) 그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봄.
- 결국 관세감축에 있어서 쌀의 관세감축 예외(또는 최소 감축)나 높은 관세율의 유지가 우리의 핵심 관심이 되어할 것으로 판단.

## 2.2. 특별긴급구제 조치의 영향

- 한편 관세감축과 더불어 특별긴급관세조치(SSG: Special Safe Guard)의 현행대로의 존치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
- 관세감축을 UR방식에 따른다고 해도 SSG를 발동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농업총소득의 흐름에 매우 큰 격차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 별로 SSG를 발동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농업총소득의 흐름을 비교해 보면 SSG를 발동할 경우(특히 물량기준) 시장개방초기

(특히 2006년과 2007년) 추가관세의 부과로 수입량을 일정 수준이내로 제한하는 수입급증 억제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0년의 농업총소득은 최대 약 1조 6천억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8, 그림 4 참조).

표 8. SSG 발동에 따른 관세감축별 농업총소득(명목) 변화

단위: 조원

	UR 방식				UR 방식+SSG			
	관세상한 없는경우	관세상한 100%	관세상한 200%	관세상한 300%	관세상한 없는경우 +SSG	관세상한 100% +SSG	관세상한 200% +SSG	관세상한 300% +SSG
2002	16.1				16.1			
2005	16.4				16.4			
2006	16.3	15.6	15.9	16.2	16.2	15.9	15.9	16.2
2007	16.5	14.8	15.7	16.3	17.5	16.2	17.2	17.4
2008	16.0	13.5	14.7	15.8	17.8	14.7	16.2	17.5
2009	16.0	13.0	14.6	15.8	17.8	13.9	16.0	17.6
2010	15.6	12.0	13.9	15.3	17.2	12.5	14.9	17.0

- 특히 고율관세가 유지될 경우 수입물량 급증시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관세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SSG는 고율관세와 연동되어 그 효과가 매우 클 수 있음.
- 스위스공식에 따른다고 해도 SSG의 발동여부에 따라 농업총소득의 차이는 UR방식을 따를 경우와 유사하게 약 1조 5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관세감축방식에 관계없이 SSG는 농업총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억제하는 중요한 보완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SSG가 폐지되면 2004년 쌀 재협상 결과 관세화를 수용할 경우에도 SSG를 활용하지 못해 국내농업에 미치는 과급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음.

- UR 방식에 따른 관세감축 시 SSG의 발동은 2010년 쌀의 수입량을 국내 소비량의 8% 이내에 머무르게 하는 효과를 가짐.

그림 4. SSG 발동에 따른 농업총소득의 변화: UR방식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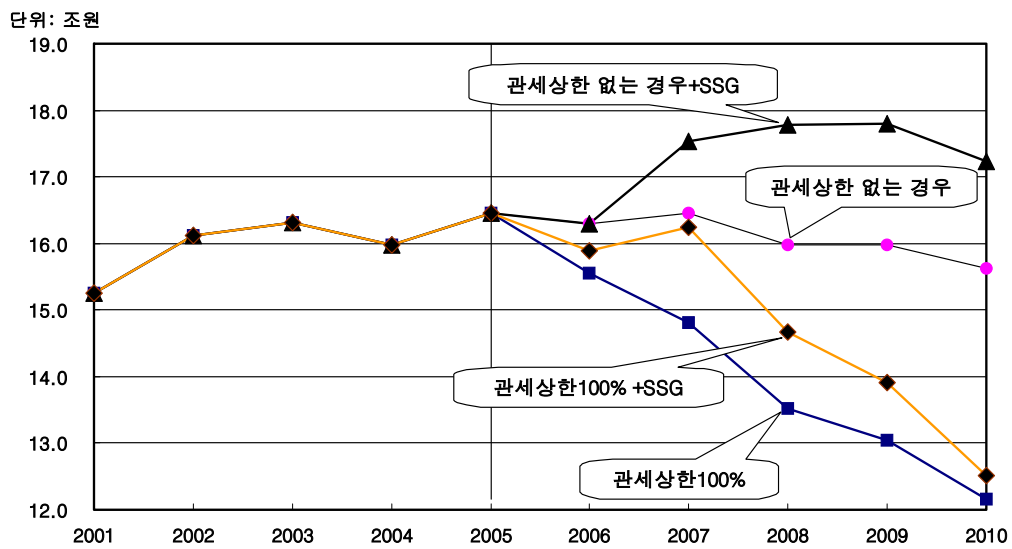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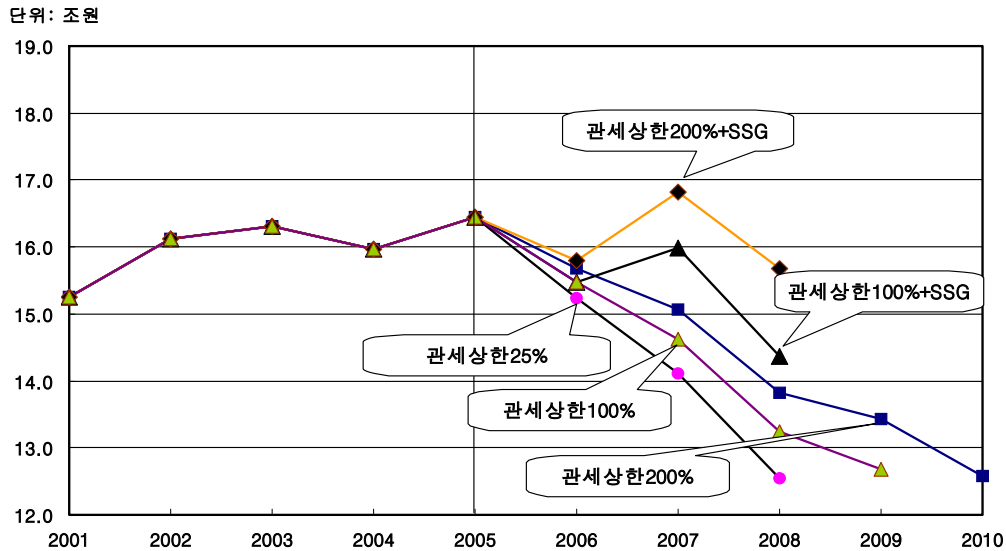


표 9. SSG 발동에 따른 농업총소득의 변화: Swiss방식 적용

단위: 조원

	SWISS 방식 + SSG				
	관세상한 25%	관세상한 100%	관세상한 100% +SSG	관세상한 200%	관세상한 200% +SSG
2002	16.1				
2005	16.4				
2006	15.2	15.3	15.5	15.7	15.8
2007	14.1	14.3	15.9	15.1	16.8
2008	12.5	12.8	14.4	13.8	15.7
2009	NA	NA	NA	NA	NA
2010	NA	NA	NA	NA	NA

그림 5. SSG 발동에 따른 농업총소득의 변화: Swiss방식 적용



### 3. 시사점

- 관세감축 시나리오별 농업총소득의 흐름을 검토한 결과 DDA 농업협상 시장접근분야에서 우리의 핵심관심은 다음과 같은 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 고율 관세의 유지.

- 쌀을 포함하여 우리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품목의 대부분은 국내외 가격차이가 매우 커, 관세화이행에 따라 고율관세가 설정되었으며, 따라서 이들 민감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의 유지는 우리 농업보호의 핵심임.



- 따라서 관세의 감축방식과 감축폭, 이행기간도 중요하나 낮은 수준의 관세상한이 설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향후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
- 만일 고율관세의 유지가 힘들다면 가장 중요한 품목에 예외를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
- 특히 2004년 쌀 재협상 결과 만일 쌀을 관세화 하여 시장을 개방할 경우, 설정된 관세상당치는 현행 DDA 농업협상에서 합의될 관세감축방식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고율관세의 유지 또는 예외품목의 획득이 우리나라의 핵심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임.

□ SSG의 현행 존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

- DDA 농업협상이 관세를 대폭 감축하는 방향으로 타결되고, 전반적인 관세수준 또한 계속 낮아질 것이므로, 향후 농산물 수입급증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임. 따라서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입국의 권리인 SSGF의 현행대로의 존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
- 특히 2004년 쌀 재협상 결과 만일 쌀을 관세화 한다면 개방초기 쌀의 수입급증을 억제할 수 있는 보완장치로서의 SSG가 가는 의미는 매우 중요.

□ 개도국 우대조치의 확보는 고율관세의 유지를 전제로.

- 감축폭과 이행기간에서 개도국 우대조치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나 만일 낮은 수준의 관세상한이 설정된다면 개도국 우대조치 확보의 혜택은 크게 상실됨.

- 따라서 개도국 우대조치를 받느냐 아니냐의 여부 자체보다는 그 내용이 더욱 중요할 것인 바 개도국 우대에 고율관세의 유지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임.



**정책연구보고 P 53 - 2002.12**  
**WTO/DDA 농업협상 시장접근분야**  
**세부협상원칙(Modality) 수립에 관한 논의 동향과 과제**

---

등록 제5-10호(1979. 5. 25)

인쇄 2002년 12월      발행 2002년 12월

발행인 이 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965-8401

인쇄 (주) 문원사 02-739-3911~5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